

2016. 8.29.(월) ~
9.1.(목) / 4일간

제283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집 회 결 과



장 성 군 의 회

목 차

1. 장성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3
2. 장성군 법인카드 등 적립금 장성장학회 출연금 지원계획안 3
3. 2016년도 제2회 세입·세출 추가경정예산안 4

의 안 명	의결 결과
○ 장성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	원안 가결
○ 장성군 법인카드 등 적립금 장성장학회 출연금 지원계획안	원안 가결
○ 2016년도 제2회 세입·세출 추가경정예산안	수정 가결

주요 내용

1. 장성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

- 발의일자 : 2016. 8. 22.
- 제출자 : 장 성 군 수
- 제안이유
 - 『장성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』는 군민의 재해 피해주택과 국민주택에 대해 국민은행으로부터 융자금을 지원받아 추진하였으나,
 - 사업추진 및 융자금 상환이 실제적으로 종결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코자 하며, 잔액은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운용코자 함
- 의결결과 : 원안가결(제2차 본회의 / 2016. 9. 1.)

2. 장성군 법인카드 등 적립금 장성장학회 출연금 지원계획안

- 발의일자 : 2016. 8. 22.
- 제출자 : 장 성 군 수
- 제안이유
 - 지방재정법 개정사항에 의해 법령 및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어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함
- 출연금 지원계획

부 서	출연기관	2016년 출연금	사업내용	관련법령
재무과	장성장학회	25,667	- 지역인재 발굴 육성 - 교육기반 마련	장성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

- 법적근거
 - 지방재정법 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
- 의결결과 : 원안가결(제2차 본회의 / 2016. 9. 1.)

3. 2016년도 제2회 세입·세출 추가경정예산안

- 발의일자 : 2016. 8. 22.
- 제출자 : 장 성 군 수
- 심사결과

○ 세 입 : 367,267,556천원

- 삭 감 : 해당없음
- 증 액 : 해당없음
- 회계별 수정내역

(단위:천원)

회 계 별	예산요구액	심 사 결 과			인정액
		세 입			
		삭감액	증 액	순삭감액	
계	367,267,556	-	-	-	367,267,556
일반회계	350,249,744	-	-	-	350,249,744
특별회계	17,017,812	-	-	-	17,017,812

- 삭감조서 : 해당없음
- 증액조서 : 해당없음

○ 세 출 : 367,267,556천원

- 삭 감
 - 1) 일반회계 : 858,000천원
 - 2) 특별회계 : 해당없음
- 증 액
 - 1) 일반회계 : 858,000천원
 - 2) 특별회계 : 해당없음
- 회계별 수정내역

(단위:천원)

회 계 별	예산요구액	심 사 결 과			인 정 액
		세 출			
		삭 감 액	증 액	순삭감액	
계	367,267,556	858,000	858,000	-	367,267,556
일반회계	350,249,744	858,000	858,000	-	350,249,744
특별회계	17,017,812	-	-	-	17,017,812

- 삭감조서

1) 일반회계

(단위:천원)

페이지	예산 과목	사 업 명	요구액	삭감액	인정액
	계	6건	908,000	858,000	50,000
133	307-08	조각가 김영중 도록 발간	20,000	20,000	-
134	201-01	장성군 야생화 사진집 제작	20,000	20,000	-
153	401-01	청소년 수련관 경관조성공사	100,000	50,000	50,000
175	402-01	수목장 조성사업 지원(2015년 국도비사업)	700,000	700,000	-
189	401-01	황룡강 전망대 기본계획 수립용역	18,000	18,000	-
232	401-01	숙근초 생산 및 조성	50,000	50,000	-

2) 특별회계

(단위:천원)

페이지	예산 과목	사 업 명	요구액	삭감액	인정액
	계				
		해당없음			

- 증액조서

1) 일반회계

· 재해·재난목적예비비 : 2,432,053천원(증 858,000천원)

2) 특별회계 : 해당없음

- 의결결과 : 수정가결(제2차 본회의 / 2016. 9. 1.)